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422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마포자원회수시설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'24. 5. 31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
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·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(폐기물의 광역 처리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, 제 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필요성

- 생활폐기물 반입·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○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

○ 소각,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·보수

○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(배출가스, 폐수 등)의 설계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

○ 고압증기 및 전력 생산·판매

○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, 용역,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

○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

라. 시설개요

○ 시 설 명 : 마포자원회수시설

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86(상암동)

○ 부지면적 : 58,435㎡

○ 시설규모 :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750톤/일(250톤/일 × 3기)

○ 처리권역 : 5개 자치구(종로, 중구, 서대문, 용산, 마포)

○ 주 용 도 :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

○ 주요장비 : 소각설비, 소각재처리설비, 연소가스처리설비 등

마. 위탁기간 : 3년 (′24.6.1. ~ ′27.5.31.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회차	위탁기간(3년)	위탁운영사	모집방법
1회	’06.06.01. ~ ’09.05.31	한라산업개발외 3개사	공개모집
2회	’09.06.01. ~ ’12.05.31	한라산업개발	
3회	’12.06.01. ~ ’15.05.31	한라산업개발	
4회	’15.06.01. ~ ’18.05.31	한라산업개발	
5회	’18.06.01. ~ ’21.05.31	삼중환경기술, 환경시설관리	
6회	’21.06.01. ~ ’24.05.31	㈜한종산업개발	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사. 소요예산(비정산비) : 20,636백만원 (′24.6.1. ~ ′27.5.31.)

-1차년도 : 6,660백만원, 2차년도.: 6,876백만원, 3차년도: 7,100백만원

아. 기대효과

○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

○ 전문적인 시설 운영·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

자. 20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′23.9.25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

> 제5조(폐기물의 광역 관리) ①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(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)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>
> ②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>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>
>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>
>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>
> 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>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>
> 3.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한 자,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업자,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관리팀 이정기 (☎2133-3681)

참 고	예산 세부 산출내역 (마포자원회수시설)

□ 1차년도

단위 : 원/년

구분			운영원가	구성비	비고
용역원가	인건비	직접인건비	4,579,156,563	68.8%	78명
		일용인건비	-	0.0%	
		소계	4,579,156,563	68.8%	
	고정경비	인적보험료	450,083,175	6.8%	
		복리후생비	161,560,116	2.4%	
		산업안전보건관리비	43,896,448	0.7%	
		교육훈련비	8,806,772	0.1%	
		세금과공과	-	0.0%	
		회의비	2,600,000	0.0%	
		소모품비	14,983,630	0.2%	
		급량비	4,982,229	0.1%	
		여비교통비	6,300,000	0.1%	
		통신비	5,701,963	0.1%	
		교통보조비	10,926,545	0.2%	
		기타경비	770,908	0.0%	
		소계	710,611,786	10.7%	
	순원가		5,289,768,349	79.4%	인건비 + 경비
	일반관리비9%)		476,079,151	7.1%	순원가 x 9%
	이윤(5%)		288,292,375	4.3%	(순원가+일비) x 5%
운영비용			6,054,139,875	90.9%	순원가+일비+이윤
부가가치세			605,413,987	9.1%	운영비용 x 10%
위탁 운영원가			**6,659,553,862**	100.0%	운영비용 + 부가가치세
위탁 운영원가			**6,659,553,000**		백원단위 절사

□ 총차년도

(단위 : 백만원/년)

항 목	금 액	비 고
1차년도	6,660	
2차년도	6,876	인상율: 3.25% 적용
3차년도	7,100	인상율: 3.25% 적용
총 사업비(3년)	20,636	

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

▢ 재위탁 개요

○ 시설 개요

- (시설위치) 마포구 상암동 481-6
- (시설규모) 750톤/일 (250톤/일 × 3기)
- (주요시설) 스토커형 소각로, 로터리킬른, 반건식반응탑, 백필터, SCR촉매탑 등
- (처리권역) 종로구, 중구, 서대문구, 용산구, 마포구 (5개구)

○ 위탁기간 : '24. 6. 1. ~ '27. 5. 31.(3년간)

○ 위탁비용 : 20,636백만원

※ 계약심사, 낙찰율 등 협상 후 실제 위탁비용은 산출금액의 약 80%

※ '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(조직담당관-7381호,'23.9.25.)

▢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추진

○ 『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』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

-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선정 후 고득점순으로 결정

▢ 위탁내용 :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
○ 반입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지시설 관리

○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, 기술검토 및 자문 등

▢ 향후 추진일정

○ 위탁비용 심사(계약심사과) : '23. 12.

○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: '24. 1.

○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(사업자 선정) : '24. 2.~3.

○ 협상 및 협약서 체결 : '24. 4.